

제350회 국회  
(임시회)

#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7년3월28일(화)

장 소 환경노동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1.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1

(09시33분 개의)

생각합니다.

○위원장 **홍영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고용노동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의결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 상황으로 위원회 활동에 전념하기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네 차례에 걸쳐 소위 활동을 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 및 출퇴근 재해와 관련하여 많은 부분에서 의견 접근이 있었습니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오랜만에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사실 이번에 많은 국민들이 근로시간 단축을 비롯한 중요 법안들에 대해서 통과를 기대했습니다마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국회는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민생을 위해서 일한다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환경노동위원회의 특히 고용소위 부분에서는 법안 심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 1.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09시35분)

○위원장 **홍영표** 오늘 10시에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관계로 곧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태경 고용노동소위원장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河泰慶** 지금부터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3월 20일, 21일, 23일, 27일까지 정부 측 관계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근로시간 한도를 1주 52시간으로 명시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통상적인 출퇴근 재해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호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은 계속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이정미 의원, 서형수 의원, 윤후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일부 내용을 반영한 위원회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회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현행 3개월 미만인 수습근로자의 경우 업무를 배우는 기간이므로 최저임금액보다 감액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단순노무업무의 경우 기능숙련 기간이 필요하지 아니하여 최저임금을 감액지급할 필요가 없으므로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사문화된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지급 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영표** 바쁘신 가운데에도 성실하게 소위 활동을 해 주신 소위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생략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의 축조심사는 소위 심사 과정에서 조문별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국회법 제 5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위원장님,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이정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정미 위원** 정의당 이정미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 법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서 있기는 하지만 정말 너무나 안타깝고 정말 분노스럽습니다.

최저임금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최소한 지급되어야 하는 그런 임금입니다. 그 임금이 6470원인 것도 사실 말이 안 됩니다. 노동부장관님이 '4인 가족이 기본적으로 일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기 위해서는 4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도 이전에 하신 적이 있고, 이렇게 낮은 최저임금을 또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인간의 최소한의 삶을 살 그런 자격도 없다라는 애

기입니까? 최저임금 그 자체가 정말 이것 정도는 줘야지 그래도 입에 풀칠이라도 한다라는 그런 조항인데 이것에다가 또 예외를 두는 이런 악법이 아직까지 온존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는 정말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 최저임금은 이 이상으로 주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만 줘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에도 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법으로 허용해 놓는다는 것이 이것이 환경노동위원회 안에서 용인되어야 할 것인지 정말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난 법안 소위에서 계속적으로 저는 노동부 차관님과, 그 자리에 장관님은 나오시지 않았지만 차관님과 담당 실국장님들의 태도에 너무나 절망스러움을 느꼈습니다. 노동부는 어떻게 해서든 일하는 사람들에게 기본 권리를 챙겨줘야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모든 법안을 논의하는 내내 기업의 이익을 어떻게 옹호해 줄 것이냐, '이러면 기업이 어렵다'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무슨 노동부입니까?

정말 앞으로 우리 환노위에 남겨져 있는 52시간 문제, 산재 문제 있습니다. 이 논의를 진행할 때는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와 이익을 우리가 어떻게 옹호해야 될 것인가를 중심으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환노위가 되고 노동부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강력한 요구를 드립니다.

**○위원장 홍영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률안 통과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오늘 최저임금법 일

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법안소위에서 생산적인 토론을 통하여 법률안을 세심하게 검토하고 합리적으로 보완하여 주신 하태경 법안소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그동안 수습근로자에 대해 3개월까지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패스트푸드원, 주유원 등 단순노무 근로자에 대해서는 감액 없이 최저임금 전액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위원님들께서 오늘 의결하여 주신 법률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역량을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영표** 수고하셨습니다.

법안 심사는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제가 회의를 마치기 전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 환경노동위원회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원인을 제가 여러 가지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국회는 항상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화와 타협의 틀은 우선은 간사회의라는 것이 있고 또 간사회의에서 만약에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국회법의 규정에 따라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지난번 MBC 청문회를 비롯해서 청문회를 간사 간에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의결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간사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고 그래서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상대방에 대해서만 어떤 요구를 하는 이런 것은 국회에서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보면, 사실 저는 많은 양보가 서로 있어서 그때 유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것들도 많이 수용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체 자신들의 주장과 다르다고 해서 반대해 버리거나 이렇게 되면 상임위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가 좀 더 생산적인 국회가 되고 말로만이 아니고 정말 민생을 챙기는, 특히 우리 환경노동위원회는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상임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소명의식을 갖고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이번에도 4개의 노동개혁 법안을 박근혜정부에서 경제계 특히 전경련이나 이런 로비에 의해서 추진되었다, 이런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도 4당 원내대표 간에 합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을 왜 대선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지, 이 법에 대해서, 수십만, 수백만 명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법이 어떤 이유로 미루어지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면 이런 사태가 다시 좀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간사 간 합의는 충분히 존중하겠습니다. 최대한 간사 간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합의된 청문회는 간사 간 협의를 최대한 빨리 해서 시기를 확정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두 분 중에 하십시오.

○신보라 위원 신보라 위원입니다.

우선 이번 고용노동소위에서 근로시간 단축 논의는 20대 국회의 개원 이후 8개월 만에 있었던 첫 논의였다는 점, 그리고 실태조사 등 현장의 목소리를 담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었다는 점에서 보완할 부분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 임금 감소, 휴일근로 실태, 예상 부족 인력, 정부 지원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자료조사가 필요하고 근로자, 사용자, 특히 중소기업주나 소상공인 그리고 청년취업준비생들, 여러 의견을 듣는 공청회나 간담회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심사했던 안건 중에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근로시간 적용 제외의 개선 등은 실태조사의 필요성이 노사정 대타협안에서도 한번 논의된 바 있습니다. 그만큼 실태조사들이 선행되어야 되는 과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장관님께 요청드리고도 싶은데 연내에 근로시간 단축 안건의 빠른 논의를 위해서도 고용노동부는 필요한 실태조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환노위

위원님들께 공유를 하고 이해를 돕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관련한 말씀을 의사진행 발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주자인 문재인 후보 아들의 고용정보원 특혜채용 의혹이 최근 언론을 통해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년취업난이 심각하고 시대의 화두가 공정이 되어 가고 있는 때 이를 검증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노위 소관 기관과의 연관성도 있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저는 당시 문제가 되었던 고용정보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2007년·2010년 감사자료 두 건을 살펴보았습니다.

2007년 감사자료에서는 ‘특혜채용 의혹을 갖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내용이 분명히 적시되어 있으며, 인사규정 위반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추가적인 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두 번째, 2010년 감사자료입니다. 이 자료에서는 문재인 후보 아들에 대한 감사 내용은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2010년 고용노동부 감사자료에는 2006년 3월부터 기간이 적시되어 있어서 실은 문재인 후보 아들 문제도 포함되어 있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은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실에서 고용노동부에 문의를 해 보니 고용노동부의 해명은 ‘대상 기간은 맞는데 내용은 빠졌다. 더 이상의 답변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세 번째는 상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채용공고에는 동영상 전문가를 뽑는지 제대로 알기도 어려웠는데 문재인 후보 아들은 자기소개서에 동영상 전문가라고 접수를 했습니다. 이에 문재인 후보 측은 ‘고용정보원이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적으로 동영상을 제작하는 것을 보고 고용정보원의 필요를 파악했던 것’이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이 정도로 홈페이지를 보고 동영상 수요와 필요를 파악해 취업을 준비했을 정도라면 취업을 하기 위한 준비를 꽤 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력서를 제출하기 위한 준비는 당연히 했을 것이라고 보는 게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튀는 귀걸이를 하고 점퍼를 입은 차림으로

찍은 사진을 이력서에 붙였습니다. 이것이 과연 여타 취업전쟁에 뛰어난 청년취업준비생들의 절박함이 느껴지는 행위인지는 좀 의아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의혹이 사그라지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한정애 위원** 그런데 이게 의사진행발언인가요? 좀 정리가 안 되는데요.

○**신보라 위원** 대선후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이 의혹을 명백히 좀 밝히는 것이 필요하고 이와 관련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자료 요구를 드리겠는데요. 오늘 고용정보원장이 출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독기관인 고용노동부가 내용을 전달해서 자료를 원실로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지급 규정을 포함한 고용정보원의 전체 사규 사본, 두 번째 고용정보원 개원 이후 어학연수 등을 이유로 고용일수보다 더 많은 휴직일수를 기록하고 퇴직금을 정산받은 사례 등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표** 임이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이자 위원** 환노위 상임위 운영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유감 표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한국당 간사로서 저 또한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근로기준법과 산재보험법, 그다음에 고용노동법은 아직 논의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상당히 이견을 많이 좁혀가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저는 이게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조금 더 있었다라고 한다면 합의까지 이루어 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다시 환노위가 열렸을 때에는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한 만큼 또 진전시켜서 가면 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올해 안으로 이 부분을 다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 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 한국당도 여기에 대한 결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환노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뿐만 아니고 전부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우리가 다시 마음을 터놓고 또 간사 간의 의견도 존중한다고 하셨으니까 다시 한 번 잘 해 나가기를 희망하면서 의사진행발언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표** 신보라 위원께서 지금 문재인

대선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장이지만 좀 발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2010년에 환경노동위원회에 있었고 2012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거 때만 되면 문제가 됐던 사안입니다. 1~2년도 아니고 사실 2007년도 국정감사부터 이게 문제가 돼서 국회에서 지금 몇 년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특히 대선후보에 대한 엄격한 검증 이런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친인척 관련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엄격한 잣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참 유감스러운 것이 2007년·2010년·2012년 당시에 문제가 돼서 2010년에도 국감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문제인 후보 자제에 대한 의혹이 있느냐, 아마 있었으면 그 당시에 다 밝혔을 겁니다. 그런데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끝냈습니다.

그다음에 또 2012년에도 2012년 대선 앞두고 이게 몇 달 동안 문제가 됐었지요. 그래서 당시에 문제인 후보를 비롯한 본인은 전혀 불법한·위법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명명백백히 밝혀달라, 그렇게 주장을 했고 저희 또 상임위에서 의결을 해서 또다시 국정감사 과정에서 조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장관, 이 사실 잘 알고 계시지요? 2012년 당시에 차관 아니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때는 제가 대학에 나가 있었습니다, 12년.

○**위원장 홍영표** 아, 그러신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위원장 홍영표** 그러면 2010년이었나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아마 그때는 제가, 11년에 나갔기 때문에 11년 전까지는 고용부에 있었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그래서 장관도 잘 알고 있는 사안일 겁니다.

그리고 제 여러 가지 경험으로 봤을 때 이게 어떤 문제가 됐다면 아마 없는 사실도 만들어서라도 어떻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여야간에 그렇게 논란이 되고 많은 문제 제기가 있어서 세 번이나 국정감사를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 저는 불쌍사나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 거의 10년째 아닙니까, 2007년부터? 뭘 어떻게 밝히라고 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국회는 어찌 됐든 국회가 의결을 해서 세 번이나 국정감사를 지시했고 고용노동부가 국정감사 지적사항으로 시정처리 결과 보고서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환경노동위원회에서만, 지금 이번까지 하면 네 번째입니다. 이제는 그만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신보라 위원 위원장님.**

○**河泰慶 위원** 잠깐만, 제가 먼저……

○**위원장 홍영표** 그만하시지요.

○**河泰慶 위원** 이것은 좀 사실관계에 관련된 얘기가기 때문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신보라 위원** 예, 사실관계 때문에……

○**위원장 홍영표** 그만하시지요.

○**이상돈 위원** 그만합시다.

○**위원장 홍영표** 지금 회의도 들어가야 되고요.

○**河泰慶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위원장 홍영표** 지금 이것은 과거에 우리 하태경 간사……

○**河泰慶 위원** 아니, 위원장님께서 지금 사실관계와 다른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위원장 홍영표** 죄송한데요.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생각을 해 보십시오. 2007년·2010년·2012년 속기록을 한번 다 보십시오. 당시에 많은 공방이 있었고요.

○**河泰慶 위원** 다 보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미 다 검토했고.

○**위원장 홍영표** 그다음에 아무튼 좀 이런 문제를 저희가 상임위에서, 오늘 이 문제 지금 제기하려고 했습니까?

○**河泰慶 위원** 제기하려고 한 게 아닌데……

○**위원장 홍영표** 아니면, 지금 밖에서 다양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양하게?

○**河泰慶 위원** 시간이 있으니까 한 말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SNS에다가 언론에다가 다 하고 있으면서 저희 상임위까지 오늘 법안심사 이것 때문에 한 것을…… 이것 때문에 열어달라고 한 겁니까?

○**河泰慶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을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그냥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홍영표 그만하시지요. 그만하시고……

○河泰慶 위원 아니, 위원장님 하고 싶은 말씀만 다 하시고……

○위원장 홍영표 아니, 기자회견 잘 하시잖아요.

○河泰慶 위원 이 자리에서도 주셔야지요.

○위원장 홍영표 아니, 기자회견 잘 하시잖아요.

○河泰慶 위원 이 자리에서도 주셔야지요.

○한정애 위원 그만하시지요, 전체회의……

○위원장 홍영표 그만하시지요. 왜냐하면 하 간사님 말하면 또 이야기하고 길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만하시지요.

○河泰慶 위원 위원장님이 사실관계와 다른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 홍영표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어느 위원님보다도 그 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河泰慶 위원 잘 아시는 분이……

○위원장 홍영표 왜? 제가 그 당시에 2010년·12년에 다 있었기 때문에.

○신보라 위원 12년에는 없었어요.

○위원장 홍영표 (자료를 들어 보이며)

12년에도 환노위에서 지시를 해서 이렇게 시정결과 보고서까지 다 있습니다.

○河泰慶 위원 그러니까 12년에 퇴직했기 때문에 감사 대상에서 빠진 것이지, 문제가 없어서 빠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인 아들이?

○위원장 홍영표 아니, 그러면 뭐를 어떻게 밝히겠다는 겁니까? 법 규정을 넘어서서 어떻게……

○河泰慶 위원 청문회 하면 되지요, 그러면.

○강병원 위원 아니……

○위원장 홍영표 그만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것가지고 한 시간 두 시간 갑니다. 그러니까 그만하시고 정리하시지요.

○강병원 위원 새로운 증거가 없어서 못 해요, 새로운 증거가 없어서.

○河泰慶 위원 제일 중요한 게 퇴직자라 가지고……

○강병원 위원 말씀하신 대로 하면 해마다 그러면 제기하면 감사를 계속 할 겁니까? 중복감사를 금지하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 홍영표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 따로 한번 하시더라도 오늘 회의는 마무리하시지요.

○문진국 위원 아니 위원장님, 간단하게 끝내요. 신보라 위원님이 자료 요청은 어차피 애기드려서

한 거니까 그렇게 정리……

○강병원 위원 해마다 그러면 제기하면 계속 감사를 합니까?

○河泰慶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위원장 홍영표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자료드리고요.

○강병원 위원 아니, 말씀을 똑바로 하셔야지요.

○임이자 위원 강병원 위원님, 그만해요, 그만해.

○河泰慶 위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장 홍영표 오늘 신보라 위원님께서 자료를……

○강병원 위원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첫 번째 감사에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중복감사를 안한 겁니다.

○河泰慶 위원 퇴직자였기 때문에 감사 대상에서 빠진 건데……

○위원장 홍영표 그 필요한 자료, 신보라 위원이 말씀하신 필요한 자료는 고용노동부에서 전부 다 드리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河泰慶 위원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같이 주십시오.

○위원장 홍영표 그렇게 하십시오.

오늘 회의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9분 산회)

○출석 위원(13인)

강병원	문진국	서형수	송옥주
신보라	신창현	이상돈	이용득
이정미	임이자	하태경	한정애
홍영표			

○청가 위원(1인)

김삼화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전문위원	김양건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
기획조정실장	박종길
노동정책실장	임서정
노사협력정책관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	정형우

**【보고사항】****○의안 회부**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 발의)

(2017. 3. 2. 김영춘·박정·박홍근·김종대·이재정·신창현·김정우·유은혜·임종성·김철민·서영교·조정식·정인화·전재수·최인호·김해영·오제세·우원식·박재호 의원 발의)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17. 3. 2. 임이자·장석춘·이양수·신보라·강석호·원유철·곽대훈·홍문종·문진국·지상욱 의원 발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17. 3. 2. 임이자·장석춘·이양수·신보라·강석호·원유철·곽대훈·홍문종·문진국·지상욱 의원 발의)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17. 3. 2. 임이자·장석춘·이양수·신보라·강석호·원유철·곽대훈·홍문종·문진국·지상욱 의원 발의)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17. 3. 2. 임이자·장석춘·이양수·신보라·강석호·원유철·곽대훈·홍문종·문진국·지상욱 의원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민 의원 대표 발의)

(2017. 3. 2. 유승민·유의동·김세연·이중구·여상규·홍일표·김현아·이학재·김학용·김재경·박성중·박인숙·김영우 의원 발의)

**청년고용기회 공정화를 위한 노조 채용비리 근절 촉구 결의안**

(2017. 3. 2. 신보라·송희경·송석준·정태욱·김기선·김명연·박덕흠·이양수·김승희·성일종·김종석·이종배·정진석·김성원·최연혜·김규환·이종명·김순례·민경욱·홍철호·이헌승·지상욱·이완영·권석창·김성찬·곽상도·전희경·김선동·조경태·강효상·주광덕·윤종필·하태경 의원 발의)

이상 7건 3월 3일 회부됨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17. 3. 3. 한정애·신창현·박홍근·박정·송옥주·민홍철·강병원·이정미·이학영·윤호중·우원식·원혜영·김상희 의원 발의)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

(2017. 3. 3. 김태흠·강훈식·어기구·성일종·박찬우·홍문표·이명수·정진석·박맹우·김삼화·임이자·문진국·신보라 의원 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17. 3. 3. 임이자·장석춘·문진국·이양수·송희경·강석호·곽대훈·홍문종·지상욱·김승희 의원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

(2017. 3. 3. 신용현·손금주·조배숙·김관영·오세정·김중로·김삼화·장정숙·이용호·김중희·박선숙·채이배·정양석·송기석 의원 발의)

이상 4건 3월 6일 회부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 발의)

(2017. 3. 6. 이정미·김종대·김수민·김중훈·노회찬·추혜선·심상정·윤소하·김종민·윤후덕·박남춘·심재권 의원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

(2017. 3. 6. 김해영·윤종오·윤소하·윤호중·이찬열·전재수·박재호·김정우·서형수·최인호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7일 회부됨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 발의)

(2017. 3. 7. 이학영·김현권·김정우·문미옥·한정애·진선미·도종환·박정·송옥주·최인호·김현미·양승조 의원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

(2017. 3. 7. 이용득·김중훈·조승래·김경협·한정애·강병원·도종환·민병두·김영주·이정미·김현권·박홍근 의원 발의)

**과로사 등 예방에 관한 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 발의)

(2017. 3. 7. 신창현·기동민·조승래·권미혁·

김철민 · 강훈식 · 어기구 · 문미옥 · 최인호 · 박정 · 송옥주 · 김경협 · 우원식 · 김두관 · 제윤경 · 이재정 · 김병기 · 김상희 · 박찬대 · 이원욱 · 박재호 · 설훈 · 이정미 · 최운열 · 이훈 · 이개호 · 노웅래 · 한정애 · 위성곤 · 유은혜 · 정재호 · 박남춘 · 강병원 · 전현희 · 심재권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 발의)**

(2017. 3. 7. 이용득 · 김영주 · 민병두 · 이정미 · 김현권 · 김종훈 · 조승래 · 김경협 · 한정애 · 강병원 · 도종환 · 박홍근 의원 발의)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

(2017. 3. 7. 강석진 · 성일종 · 윤한홍 · 함진규 · 주광덕 · 추경호 · 김한표 · 김선동 · 박대출 · 송희경 의원 발의)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2017. 3. 7. 함진규 · 윤후덕 · 박덕흠 · 이은재 · 이철우 · 김기선 · 정유섭 · 이현승 · 염동열 · 이종배 의원 발의)

이상 6건 3월 8일 회부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2017. 3. 8. 김성원 · 광상도 · 권석창 · 김상훈 · 김정재 · 박덕흠 · 박명재 · 박인숙 · 유민봉 · 윤상현 · 이명수 · 이우현 · 정태욱 의원 발의)

3월 9일 회부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 발의)**

(2017. 3. 9. 임이자 · 金成泰 · 장석춘 · 신보라 · 윤종필 · 강석호 · 홍문중 · 문진국 · 지상욱 · 성일종 의원 발의)

3월 10일 회부됨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

(2017. 3. 10. 김영춘 · 최인호 · 김혜영 · 전재수 · 우원식 · 박정 · 송옥주 · 안규백 · 박남춘 · 서형수 · 이정미 · 윤관석 · 김철민 · 박주민 · 오제세 의원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 발의)**

(2017. 3. 10. 임이자 · 문진국 · 김명연 · 장석춘 · 강석호 · 홍문중 · 지상욱 · 김승희 · 윤종필 · 이양수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13일 회부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 발의)**

(2017. 3. 15. 전현희 · 김철민 · 박홍근 · 유은혜 · 김정우 · 김영춘 · 박남춘 · 윤관석 · 이정미 · 이원욱 의원 발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 발의)**

(2017. 3. 15. 신보라 · 함진규 · 정갑윤 · 이종배 · 이철규 · 박덕흠 · 김영우 · 김성찬 · 이종명 · 조훈현 · 임이자 · 하태경 · 문진국 의원 발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

(2017. 3. 15. 신보라 · 함진규 · 정갑윤 · 이종배 · 이철규 · 박덕흠 · 김영우 · 김성찬 · 이종명 · 조훈현 · 임이자 · 하태경 · 문진국 의원 발의)

이상 3건 3월 16일 회부됨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

(2017. 3. 16. 이정미 · 심상정 · 추혜선 · 윤소하 · 노회찬 · 김종대 · 송옥주 · 이상돈 · 한정애 · 박홍근 · 황주홍 · 이용득 의원 발의)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2017. 3. 16. 신창현 · 강병원 · 유동수 · 김철민 · 권미혁 · 전해철 · 윤후덕 · 어기구 · 김한정 · 송기현 · 이훈 · 박정 · 송옥주 · 김병욱 · 유은혜 · 조승래 · 김영호 · 김종민 · 위성곤 · 이개호 · 김병기 · 박찬대 · 김상희 · 임종성 · 원혜영 의원 발의)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 발의)**

(2017. 3. 16. 이정미 · 노회찬 · 심상정 · 김종대 · 윤소하 · 추혜선 · 진선미 · 김현권 · 권미혁 · 박남춘 · 원혜영 · 어기구 · 김종훈 · 이용득 · 이훈 · 윤종오 · 김종민 · 윤관석 · 송옥주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 발의)**

(2017. 3. 16. 이정미 · 노회찬 · 심상정 · 김종대 · 윤소하 · 추혜선 · 진선미 · 김현권 · 권미혁 · 박남춘 · 원혜영 · 강병원 · 어기구 · 김종훈 · 이용득 · 이훈 · 윤종오 · 김종민 · 윤관석 · 송옥주 의원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



(2017. 3. 16. 김영춘·박정·박홍근·민병두·김종민·민홍철·어기구·서영교·박남춘·우원식·김수민·김철민·황주홍·박재호·김종희·조경태·윤관석·유승희·윤종오 의원 발의)

이상 5건 3월 17일 회부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

(2017. 3. 17. 김성수·박정·고용진·이춘석·진선미·이철희·표창원·유승희·이훈·김경진·박홍근·김병욱·이상돈·이개호·임종성·김중로·박범계·송기현·노웅래·추혜선·김영주 의원 발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2017. 3. 17. 강병원·유은혜·김병욱·고용진·장정숙·서형수·서영교·박재호·이용득·윤종오·박남춘·이정미·우원식·김철민·유승희·박용진·제윤경·박주민·이철희 의원 발의)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구제법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2017. 3. 17. 신창현·오영훈·송옥주·김성수·제윤경·강훈식·문미옥·조승래·윤후덕·최인호·박남춘·박주민·기동민·유은혜·박정·김병욱·정춘숙·김철민·김병기·김현권·소병훈·송기현·박찬대·이철희·홍영표 의원 발의)

이상 3건 3월 20일 회부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2017. 3. 21. 위성곤·이개호·표창원·정인화·황주홍·윤영일·신창현·이양수·조배숙·홍문표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17. 3. 21. 한정애·강훈식·김경협·김민기·김병욱·김상희·김승희·김영주·김철민·문미옥·박경미·서형수·송옥주·신창현·어기구·이용득·홍영표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22일 회부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

(2017. 3. 22. 윤영일·최경환(국)·이개호·박재호·이훈·강창일·이동섭·장정숙·정인화·

위성곤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민 의원 대표발의)

(2017. 3. 23. 유승민·박인숙·주호영·오신환·이종구·김현아·김세연·유의동·이혜훈·지상욱·이학재·김영우 의원 발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2017. 3. 23. 윤관석·강창일·정성호·조배숙·윤소하·박정·이태규·민병두·유승희·신경민 의원 발의)

이상 3건 3월 24일 회부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

(2017. 3. 24. 문진국·김정재·정갑윤·김석기·신보라·이철규·김현아·임이자·유기준·장석춘·송희경·여상규·배덕광 의원 발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

(2017. 3. 24. 문진국·김정재·정갑윤·김석기·신보라·이철규·김현아·임이자·유기준·장석춘·송희경·여상규·배덕광 의원 발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

(2017. 3. 24. 신보라·이종배·하태경·문진국·김석기·김선동·이종명·박명재·함진규·송희경 의원 발의)

이상 3건 3월 27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디지털기반 산업 기본법안**(정세균 의원 대표발의)

(2017. 3. 7. 정세균·박홍근·어기구·윤호중·조배숙·정운천·홍영표·장병완·김영진·고용진·이동섭·정인화·박남춘·문미옥·오영훈·이원욱·권철승·김정훈·김경수·김한정·김영춘 의원 발의)

3월 8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이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고려인동포의 귀국 및 정착지원을 위한 특별법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

(2017. 3. 15. 곽대훈·김도읍·정운천·임이자·김정재·최연혜·함진규·이채익·김명연·김승희 의원 발의)

3월 16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

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 발의)

(2017. 3. 21. 조경태·윤종오·이현재·민홍철·  
정성호·엄용수·강석호·황주홍·이종명·  
이명수 의원 발의)

3월 2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  
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